법무법인(유) 화우
YOON & YANG

LEGAL UPDATE
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3-7호
Dec. 2023

보험 정책 동향

- 금융위원회, 금융사 해외진출·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「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」 변경예고 (11.24.) -

1. 개 요

- 금융위원회는 「**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**」(이하 해외진출규정) **전면 개정안**에 대한 **규정 변경예고**('23.11.27~12.10.)를 진행

2. 주요 내용

[1]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

- 현행 해외진출규정은 금융회사가 **연간 2천만불을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 투자** 및 **해외에 지점·사무소 설치**시 금융위(또는 금감원)에 **사전 신고**하도록 규정
-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시 **사전신고 의무**를 **사후보고**(투자·설치 후 1개월 내)로 **전면 전환**

[2]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·보고 부담 해소

- 은행법·자본시장법·보험업법 등 **개별 업권법에도 해외투자 및 해외진출 관련 신고·보고사항 등이 규정**됨에 따라, 금융회사들은 **동일한 해외직접투자**에 대해 **해외진출규정**과 **개별 금융업권법**에 따라 **중복된 신고·보고 의무**를 부담하는 사례*가 존재

  * (예) A은행은 해외법인 증자와 관련하여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'22.12월 사전신고하여 수리받았으나, 자회사 등에 출자시 지체없이 보고토록 규정한 은행법에 따라, '23.6월 금융위에 다시 보고

- 개정안에서는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**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·보고**하는 경우, **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·보고한 것으로 의제**하는 규정을 신설

[3] 출자요청(Capital Call) 방식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 신설

- 금융회사들은 **해외운용사의 펀드**(역외금융회사) **투자**시, **출자요청**(Capital Call) **방식***을 **이용해 투자**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, 해외진출규정에는 개인·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외국환거래규정과 동일하게 **출자요청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없어,** 금융회사는 **출자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·보고**하는

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.

어려움*이 제기

* (예) A운용사의 B부동산펀드는 '19.5월 이후 '23.2월까지 총 35회의 출자요청(Capital Call)에 대해 출자시마다 사전신고

-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의 **출자요청 방식 역외금융회사 투자**의 경우, **최초 보고시 출자약정 총액 및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**하고, **동 기간 내 출자요청**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에는 **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사실만 제출**하도록 **특례**를 규정

[4]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 일부 허용

- **해외진출규정**은 모법인 **외국환거래법에 근거**하여 **해외지사**를 영업기금을 보유하고 **영업활동이 가능한** 「**지점**」과 조사·업무연락 등 **비영업활동을 위한** 「**사무소**」로 구분하고 있으나, **일부 국가**의 경우 **사무소**도 **영업활동을 허용**하는 등 국내와는 다른 법률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국내 **해외진출규정상 사무소는 영업활동이 불가**하여 **현지에서 허용하는 제도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한다**는 지적이 제기

* (예) 콜롬비아의 경우, 외국 재보험사의 지점 설립 관련 규정이 없는 대신 사무소에 대해 본사를 대리한 영업활동 일부를 허용

- 개정안에서는 **해외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**에서 **사무소도 영업이 가능**하도록 함

[5] 개정사항 요약

① **일반법인** 및 **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신고·보고 의무**

구 분		현 행	개정안
일반법인 투자 (역외금융회사 外)	▸**신규·증액** (§3①)	• [年3천만불↑] 사전신고(+수리) • [年3천만불↓] 사후보고	좌동
	▸**내용변경·청산** (§3⑤)	• **사후보고** : 금감원**(3개월 內)**	• 사후보고 : 금감원 - 투자금회수·청산 : 3개월 內 - **그 외 :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內**
	▸**사후관리** (§6①)	• 사후보고 : 금감원 - 증권취득 : 투자금 납입후 6개월 內 - **송금 보고 : 송금 즉시** - 연간사업실적 : 회기 종료후 5개월 內	• 사후보고 : 금감원 - 증권취득 : 투자금 납입후 6개월 內 - **송금 보고 : 송금 즉시 (단, 신규·증액 사후보고시점과 통합 가능)** • 연간사업실적 : 회계기간 종료후 5개월 內
역외금융회사 투자	▸**신규·증액** (§7①)	• **[年2천만불↑] 사전신고 : 금감원** • **[年2천만불↓] 사후보고 : 금감원 (1개월 內)**	• **사후보고 : 금감원(1개월 內)** ※ **출자요청(Capital Call)방식 투자에 대한 특례 신설**
	▸**내용변경·청산** (§7④,⑩)	• 사후보고 : 금감원**(1개월 內)**	• **사후보고 : 금감원** - 투자금회수·청산 : 1개월 內 - **그 외 :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**
	▶**사후관리** (§6①,7⑤)	• 사후보고 : 금감원 - 송금 보고 : 송금 즉시 - 연도별 역외금융회사 설립·운영현황 : 다음해 4월말	• 사후보고 : 금감원 - **송금 보고 : 송금 즉시 (단, 신규·증액 사후보고시점과 통합 가능)** - 연도별 역외금융회사 설립·운영현황 : 다음해 4월말

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.

② 해외지사(지점·사무소) 설치·운영시 신고·보고 의무

구 분	현 행	개정안
▸**지사설치**(§8)	• **사전신고(+수리) : 금감원**	• **사후보고 : 금감원(1개월 內)**
▸**영업활동**(§12,13)	• **사후보고 : 금감원** - 부동산거래, 증권거래 등 : 행위 후 1개월 內 - 결산 보고 : 결산일후 6개월 內	좌동
▸**지점 영업기금 변동 사무소 확장 경비** (§9②, §11②)	• **사전신고 : 금감원**	• **사후보고 : 금감원(1개월 內)**
▸ **내용변경·청산(§14)**	• 사후보고 : 금감원 - 내용변경 : 사유 발생 후 1개월 內 - 청산 : 즉시	좌동

※ 추가사항: ❶ 금융업권법과의 중복 신고·보고 부담 해소(업권법에 따른 신고·보고시 해외진출규정에 따른 신고·보고 의제), ❷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일부 허용 등

3. 향후 계획

▪ 해외진출규정 전면 개정안은 **'23.11.27.(월)**부터 **12.10.(일)**까지 **변경예고**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, **금융위원회 의결**을 거쳐 시행될 예정

(원문 링크)

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1140

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.